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

- 행정규제완화위원회 -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제1차 행정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姜英勸국무총리)를 열고,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李鎮高경제기획원차관)의 조정을 거쳐 상정된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7백미터 이상으로 되어있는 주유소 거리제한을 추가완화하고, 시설개조 및 종설허가제를 개선하며, 폴사인제도의 확대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미 실효성이 없어졌거나 행정편의의 위주로 되어있는 각종 행정절차중 우선 7백41개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부처별로 연탄등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해운등 8개 업종은 7월말, 증권등 3개 업종은 8월말까지 각각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

1. 추진배경

-과거 고도성장과정에서는 정부의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개입과 규제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과당경쟁의 폐해를 축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었음.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를 억제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음.

- 앞으로 우리경제의 활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하여 민간의 창의와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수출 및 투자부진의 해소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 경제촉진이 보다 요구됨.
- 또한 현재 진행중인 산업구조의 첨단화와 정보화의 촉진을 위해서 경쟁여건조성이 필요할 뿐아니라 현재 무역, 외환, 자본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내경쟁체제의 구축이 필요.
- 이에따라 정부는 '80년대 중반 이후 정부규제완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 7개 개별산업육성법을 폐지하는 대신 공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 인·허가규제를 폐지('86년)
- 특별법상 수입제한제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수입 추천 및 허가품목을 축소하고, 공산품의 품질검사 등 각종검사·검정 및 형식승인 등 수입절차상의 제한을 완화('87~'89년)
- 경제법령정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상공회의소 등 민간경제단체가 전의한 주유소 거리제한개선

등 규제법령정비 추진('88~'89년)

○ 경제자율화 및 경쟁촉진대책반을 구성하여 각 경제부처가 추진할 87개 인·허가의 규제개선, 절차간소화와 정유산업 등 10개 산업의 경쟁촉진대책을 추진('88년~89년)

○ 6개 공업단지관련법률을 통·폐합 정비하는 공업입지관련법률을 제정하여 입지공급 및 공장설치를 간소화('89년)

- 그러나 아직도 서비스산업, 농업관련산업, 금융산업등 비제조업분야에는 정부규제가 잔존하고 있어 경제발전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저해하고 있음.

2. 추진체계

(1) 行政規制緩和委員會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처장관등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총22명)를 설치(대통령령 제정)

(2) 실무위원회

작업과제의 선정,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차관(11명)과 법제처차장, 국무총리실 제2행정조정관을 위원으로 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

(3) 실무작업반

실무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에

실무조정작업반을, 각 부·처·청에 산업담당 실무작업반(반장: 각 부처 해당산업담당국장)을 구성토록 하여 규제개선 실무작업을 추진

3. 추진방식

- 주무부처의 산업담당 실무작업반장은 작업과제에 대한 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을 포함하는 계획서를 경제기획원의 실무조정작업반과 사전협의

- 주무부처 산업담당 실무작업반장은 사전 협의된 안건을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토록 함.

- 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부처별로 시행하고 사후에 본위원회에 결과보고

- 중요한 정책사항이나 부처간의 기능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에 상정·확정

- 법률개정 시행시 국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시행부처가 공청회를 개최

4. 추진과제

(1) 그동안 경제자율화 및 경쟁촉진을 위해 검토되어온 다음 산업에 대해서는既 조치한 규제완화에 추가하여 규제완화방안을 '90년 6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

○ '90년 및 '91년 중 조치할 세부집행계획

○ 규제완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규제개선사유	既 조 치	추가검토과제 (例 示)	관 부 처
1. 酒類產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 - 지역간 수급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酒類都賣業 신규면허 요건 緩和 (90. 1) - 소주 自道酒 의무 구입 비율 완화 (50%→40%, 90. 1) - 일반주류도매상과 양주 도매상 구분 폐지 (90. 1) - 주류도매상의 판매지역 제한 개선 ○ 시·군단위 제한을 직할시·도로 광역화 (9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지역 규제 등 규제를 추가완화 - 酒精配定 제도의 추가 개선 	國稅廳

	규제개선사유	既　　조　　치	추가검토과제 (例　　示)	관계부처
2. 精油產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既存企業의 기득권 유지에 따른 경영개선 노력이 악화 - 주유소 거리 제한 등은 자가용 운전자에 대한 불편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프타 및 고급휘발유 가격 자율화(89.3) - 주유소 거리 제한 완화(8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 1km → 700m - 임가공원유등 도입승인 제 폐지 등(8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개조 및 중설허가제 개선 - 주유소 거리 제한 추가 완화 검토 - 상표 표시제의 확대등 유통구조의 개선검토 	動力資源部
3. 煤炭產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연탄초과공급 상황에는 맞지 않는 판매구역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개지 역을 23개로 광역화(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煤炭供給區域을 도단위로 광역화 검토 	動力資源部
4. 農藥產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입제한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藥原劑業體의 농약제 조업 참여허용 검토 - 농약원제업체의 원제수입업 참여허용 검토 	農林水產部
5. 配合飼料 產　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飼料製造原價 상승 및 품질 저하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허가제 완화 검토 	農林水產部
6. 通關聯 食品產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박 수입 제한으로 사료업체 및 축산농가의 부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두유, 대두박 수입제한 완화 검토 	農林水產部
7. 製粉產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분업의 경영자율성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분시설의 명의변경, 이·증설 승인제 완화 검토 	農林水產部
8. 醫藥品 產　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격 규제로 가격인하요인 발생 시 소비자에 대해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소매가격 제도 개선 	保健社會部
9. 貨物 自動車 運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역위반 영업행위가 일 반화되고 低收益 路線포기, 무단결행 등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화물 운송사업자의 허가제 개선 - 노선의 신설, 변경기준 완화 검토 	交通部
10. 情報通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검색·처리·교환 사업의 민간참여 개방(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영역규제 완화 검토 - 참입제한 완화 검토 - 통신회선 사용제한 완화 검토 	遞信部

(2)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과 UR / 서비스 협상의 진전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개방에 대비하여

대내경쟁 촉진이 필요한 다음 산업에 대해 과제별로 규제완화추진계획을 '90. 7. 31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

○과제별로 '90년 하반기와 '91년까지 규제완화를 위한 추진일정등 세부계획

○규제완화의 충격이 있을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동시에 마련

	規 制 改 善 事 由	檢 討 課 題 (例示)	關係部處
1. 化粧品	- 업종 경쟁력 저하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 및 마케팅 활동에 저해	- 품목허가제도 개선 - 容器, 포장의 표시사항 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 - 원료 사용규제의 개선	保健社會部
2. 自動車 管 理	- 點檢·検査制度가 유사 - 자동차수의 증가에 따라 정비업체 수가 절대 부족	- 정기점검과 계속검사 제도의 개선 - 정비업의 시설기준 완화 - 정비, 매매업의 허가제 개선	交 通 部
3. バス旅客 運送	- 고속·시외버스업종 구분의 실익이 없음	- 고속·시외버스 업종 통합 검토 - 사업계획변경인가 제도 개선 ○ 共同운수협정·상속 등 일부 인가사항의 신고제 전환검토	交 通 部
4. 遠洋漁業	- 既存 원양어업자의 보호장치화	- 원양어획물 반입 규제의 개선	水 產 廳
5. 海運業	- 국제경쟁력향상을 저해	- 구역, 항로별 면허제도 개선	海運港灣廳
6. 觀光產業	- 관광호텔업의 경영에 대한 정부개입이 과다	- 관광호텔업의 更新등록제 및 등급 결정제 개선	交 通 部
7. 倉庫業	- 경쟁여건 不備로 산업체질이 허약 - 창고업의 규모화 저해 - 이용자의 불편	- 창고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검토 - 창고요금 허가제 개선 검토 - 창고업 위치변경, 허가개선 및 讓·受渡 인가제 완화 검토	交 通 部
8. 技術 用役業	- 기술사 수급불균형에 따른 등록 및 신규 창업 곤란 - 기술축적 및 개발 저해	- 기술용역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제 개선 검토 - 외국용역발주승인제 완화 검토	科學技術處

(3) 국민소득상승에 따라 질적으로 변화되는 금융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민간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이용개선방안을 '90. 8. 31까지 실무위원회에 상정

○은행, 보험, 증권업별 금융이용 절차 및 방법의 개선

○이용자에게 불리한 각종 약관의 개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금융산업 내부관행의 개선

(4) 절차간소화와 지방위임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절차간소화와 지방위임의 확대 등은 기업의 인력 및 시간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

-우선 부처간 既合意된 사항은 6월중에 실무위원회에서 최종확정

〈例〉 ○수출검사부담완화 및 관세환급제도 개선

○사전사업계획승인제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시험·검사대상축소와 절차개선

○認·許可制의 지방위임등

-이와 별도로 부처별로 절차간소화 및 지방위임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90. 7. 31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하고 이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例〉 ○정책자금 지원절차 간소화

- 國民保健, 환경, 안전관리 등 공익을 위한 인·허가시 서류등 절차간소화 및 기준의 합리화
- 지방위임확대등

*다만 일반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와 중복되는 사항은 본실무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

(5) 추가작업과제의 선정·추진

-금번 작업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의견과 관련산업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작업과제를 선정하여 규제완화 추진

□ 관 보 □

◎동력자원부공고 제90-19호

송유관사업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송유관사업법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0년 6월 16일

동력자원부장관

1. 제정취지

송유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한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송유관사업의 허가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 나.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송유관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고대상인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함.
- 다. 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 법인합병·인가신청, 승계신고, 사업의 휴폐지, 허가신청, 법인해산·인가신청등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함.

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감경규정을 정함.

마.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시설의 기술기준 등을 정함.

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획증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및 신고대상인 사항을 정함.

사.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규정 인가신청 방법 및 절차를 정함.

아.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석유수송의 거부사유를 정함.

자.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내용 및 인가신청방법 절차 등을 정함.

차.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용시설의 범위와 검사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

카. 기타 송유관사업법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송유관사업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 7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력자원부장관(참조: 석유수급과장, 전화: 500-2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과 주소